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 **245**

제출연월일: 2007.10.29.

제 출 자: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도서관법」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(안 제19 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서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7. 9. 28. ~ 10. 17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조중 "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"을 "대전광역시한 밭도서관"으로 한다.
- 제2조제1호중 "도서관이"를 "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이"로 한다.
-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9조의2(운영위원회) ①관장은「도서관법」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운영한다.
 -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 - 2. 자료의 수집·열람 및 대출 등 시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
 - 3.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5.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
 -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.
 -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⑤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.
 - 1. 도서 또는 사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
 - 2. 그 밖에 교육 및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 - ⑧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과장이 된다.
- ①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대전광역 시 한밭도서관운영위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·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<u>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</u> 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대전광역시
제2조(정의) (생략) 1. "도서관 자료"(이하 "자료"라 한다)라 함은 <u>도서관이</u>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. 2. ~ 6. (생략) <u>〈신설〉</u>	

현 행	개 정 안
	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⑤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. 1. 도서 또는 사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기타 교육 및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 ⑧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성으로 의결한다. 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과장이 된다. ⑪위축위원에 대하여는 「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⑫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관 련 법 규

◈도서관법

제30조 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)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-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**도서관운영위원회**를 두어야 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당해 **지방자치단체의 조례**로 정한다.